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2. 22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12. 19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2. 19

다. 상 정 일 자 : 제3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94.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성 종 무)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94. 12. 2 국회의결)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규칙·훈령·예규 중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는 자구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규칙·훈령·예규중 “부산직할시”의 자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부산직할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사하구
-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장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
- 부산직할시 → 부산광역시
- 부산직할시장 → 부산광역시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5년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기능을 보강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완화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하는 한편 기타 현행 자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취지에서 직할시 용어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조례·규칙·훈령·예규에 있는 제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